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의안번호 : 제3604호
- 나. 제 안 자 : 허훈 의원(찬성자 15명)
- 다. 제 안 일 : 2026년 4월 1일
- 라. 회 부 일 : 2026년 4월 7일

2. 제안이유

- '21년 12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훈련기관의 학습자가 '23년 1학기부터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등의 학자금대출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분명히함(안 제1조).
- 나. 이자 지원 대상에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하고 최종 학점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개정함(안 제2조).

- 다. 용어의 정의를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함(안 제3조, 제7조 및 제10조).
- 라. 교육훈련기관 학습자의 이차지원 대상 자격 기준을 신설함(안 제3조).
- 마.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부칙 신설).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5. 검토 의견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이라 함) 개정으로 ‘교육훈련기관¹⁾’의 학습자가 2023년부터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고 현행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등의 조문을 정비하며 이자지원 예산 편성 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내용

“현황 및 실태”

1) 「장학재단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학자금대출 지원

- 학점은행제²⁾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의 학점 취득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장학재단법」에 따른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고, 이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학자금 지원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음³⁾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

마.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2)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고, 일정 기준 충족 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학습 제도로, 학점은행제에서 인정되는 학점의 종류로는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자격 취득, 독학학위제 등이 있음(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을 개정하여 고등교육기관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함)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붙임1)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붙임2)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을 포함시켰고, 2023년 1학기부터 교육훈련기관의 학습자가 「장학재단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⁴⁾

2)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개요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⁵⁾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서울시의 자치사업으로, 2012년 1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
- 현행 조례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인 고등교육기관의 범위를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의 가목부터 다목(대학, 전공대학, 기능대학 등)으로 한정⁶⁾하고 있으나, 이는 2021년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2조제6호라목(교육훈련기관)을 조례에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학습자들이 이자지원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3) 국회 교육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 검토보고서」, 2020. 11., 8면

4)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자격요건(출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대상기관: 교육부장관 고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26년 기준 162개소)

-연령/국적: 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단, 연속 학습 시 최대 59세)

-성적기준: 직전 학기 성적 70점(C학점) 이상 / (신입생·장애인) 제한 없음

-제한사항: 단일 교육훈련기관 내 105학점 초과 이수자 제외

5)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현황(출처: 「2026년 제1회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공고」)

-대상: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국내 대학·대학원 재·휴학생 및 졸업생(5년 이내) 등

-방법: 매년 상·하반기별 정기 공고를 통한 모집 및 접수

-범위: 직전 반기 한국장학재단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액

-원칙: 대상자의 소득구간(분위) 등에 따른 차등 지원

6)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안 검토”

1) 용어 정의 개정 (안 제2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는 「장학재단법」 개정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에 교육훈련기관을 추가하고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인 대학생의 범위를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며, 조례 용어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지역 대학생’을 ‘대학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고등교육기관”이란 <u>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u> 을 말한다. 3.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국내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u> 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u>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라목----- 시설 등-----</u> . 3. “대학생”이란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을 말한다. 가. <u>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 등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졸업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u> 나. <u>법 제2조제6호라목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하고 최종 학점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u>

- ‘고등교육기관’ 정의에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라목(교육훈련기관)을 추가하는 것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대상을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이에 따라 ‘대학생’ 정의에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하고 최종 학점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하는 것은 기존 대학생에 대한 지원 기준(재학 또는 휴학중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기존 ‘서울지역 대학생’이라는 용어 중 “서울지역”이라는 표현이 학교의 소재지인지 또는 학생의 거주지인지에 대한 조례 용어 해석상의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현행 조례 용어 정의에서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용어를 ‘대학생’으로 간소화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2) 조례 목적 개정 (안 제1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는 조례 용어 개정 사항(안 제2조)을 반영하여 조문 간 정합성을 높이고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의 입법 취지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지역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안정적인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u>대학생</u> ----- ----- <u>대학생</u> ----- ----- -----.

- 이는 안 제2조에서 기존 ‘서울지역 대학생’을 ‘대학생’으로 용어 정의를 개정함에 따른 조치로서 조례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하여 조례 용어 해석상 혼선을 방지한다는 측면에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또한 현행 조례의 목적이 서울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입법 취지와 연관성이 낮은 “서울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 제고”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임

3) 용어 일괄 정비 등 (안 제3조, 제7조 및 제10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7조 및 제10조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대학생’으로 개정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① <u>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은 서울지역 대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u>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① <u>학자금대출 ----- 대학생 ---</u> ----- ---
② <u>제1항에 따른 이자지원 대상 서울지역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u>	② <u>제1항에 따른 이자지원 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졸업생 등의 지원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u> 1. <u>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휴학생은 최대 6학기(입영 또는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졸업생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5년으로 한다.</u> 2. <u>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서 최종 학점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5년으로 한다.</u>
③ <u>제1항의 이자지원 대상 서울지역 대학생 중 졸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u>	<삭 제>

<u>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5년으로 한다.</u> ④ (생 략) 제7조(수급자격의 정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수급자로 확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한다. 1. (생 략) 2. 제2조제3호에 <u>따른 서울지역</u> 대학생의 요건 상실 3. (생 략) 제10조(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4. (생 략) 5. 대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u>대표 등</u>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7조(수급자격의 정지) ----- ----- -----. 1. (현행과 같음) 2. ----- <u>따른</u> ----- 3. (현행과 같음) 제10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 <u>대표</u> 6. (현행과 같음)
---	---

- 현행 조례에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서울지역 대학생” 등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이를 ‘대학생’으로 통일하여 조례 용어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3항제5호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을 “대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10조제3항제6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로 수정하는 것은 위원 구성의 명확성을 높이는 적절한 조치라 할 것임

4)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이자지원 기간 신설 (안 제3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대상을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들의 이자지원 기간을 「학점인정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서 최종 학점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5년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① <u>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은 서울지역 대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u>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① <u>학자금대출 ----- 대학생 -----</u> -----
② <u>제1항에 따른 이자지원 대상 서울지역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u>	② <u>제1항에 따른 이자지원 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졸업생 등의 지원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u> 1. <u>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휴학생은 최대 6학기(입영 또는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졸업생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5년으로 한다.</u> 2. <u>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서 최종 학점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5년으로 한다.</u>
③ <u>제1항의 이자지원 대상 서울지역 대학생 중 졸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5년으로 한다.</u>	<삭 제>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 현행 조례는 이자지원 대상 지원기간을 휴학생은 최대 6학기(입영 또는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로 하고, 졸업생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학점은행제는 일반 대학교와 달리 졸업이나 휴학의 개념이 없으므로 현행 대학생 지원 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기준인 최종 학점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5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판단됨

5) 시행일 설정 (부칙 신설)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사업예산 편성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올해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예산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 지원 대상 확대에 한계가 있고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인 시행규칙⁷⁾ 정비 및 지원 신청 공고 등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해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시행일 설정은 필요하다 할 것임
- 서울시의회사무처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3)에 따르면 기초 통계 자료 부족과 이자지원 신청 지원 사업의 특성상 객관적 비용추계가 어렵다는 의견이나, 한국장학재단의 서울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의 대출 현황을 반영해 신규 이자지원 대상을 시행일 기준 1만 명으로 추산하고 전원 신청을 가정할 경우, 기존 이자지원 신청자(약 4만명) 대비 약 20~30%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7)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공고일 현재 조례 제2조제3호의 서울지역 대학생
2.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지역 대학생

- 서울시는 신규 지원 대상인 교육훈련기관 학습자에 대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하여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기존 지원 대상자의 수혜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진행 절차 (※ 출처: 서울시)



○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기준 : 시행규칙 제5조(지원 우선순위)

지원 우선순위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범위
1	소득 1~7분위	발생이자 전액
2	다자녀(소득분위 무관)	발생이자 전액
3	소득 8분위 이상	예산범위의 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지원 범위 결정

○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추진실적 (※ 출처: 서울시)

구 분	신청인원 (명)	지원인원 (명)	지원률 (%)	지원금액 (백만원)	1~8분위, 다자녀	9분위 이상
2021년	15,341	13,238	86.2	1,485	전액지원	미지원
2022년	20,131	16,213	80.5	1,765	전액지원	미지원
2023년	39,548	32,485	82.1	3,264	전액지원	미지원
2024년	41,895	35,828	85.5	3,738	전액지원	미지원
2025년	39,539	29,327	74.2	3,148	전액지원	미지원

○ 서울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학자금대출 누적 현황 (※ 출처: 한국장학재단)

구 분	대출금액(백만원)	인원(명)
2023년 (시행년도)	4,653	1,690
2024년	11,758	4,329
2025년	19,612	7,220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에 교육훈련기관 학습자를 추가함으로써 서울시에 거주하는 교육훈련기관 학습자의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는 「장학재단법」 개정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에 교육훈련기관을 추가하고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인 대학생의 범위를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며, 조례 용어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지역 대학생’을 ‘대학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는 용어 정의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간 정합성을 높이고, 본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문구를 삭제하여 조례의 입법 취지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7조 및 제10조는 안 제2조에서 ‘서울 지역 대학생’을 ‘대학생’으로 정의를 개정함에 따라, 조례 내 통일성을 위해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라고 할 것임
- 또한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는 이자지원 대상에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가 포함됨에 따라 이들의 지원 기간을 「학점인정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서 최종 학점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5년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 할 것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은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인 시행규칙 정비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적합한 조치로 판단되나, 서울시는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기존 지원 대상자의 수혜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기관명			
(A)알파원격평생교육원	단국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	위더스원격평생교육원
(A+)에이플러스교육원	대교뉴이캠퍼스원격평생교육원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유니와이즈원격평생교육원
(ALL)올에듀원격평생교육원	대림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서울여자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유비온원격평생교육시설
(GB)글로벌이노에듀	대진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을지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성 남캠퍼스)
(IT)메가존아이티평생교육원	덕성여자대학교평생교육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젠에듀원격평생교육원
(KC)국민사이버평생교육원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평생교육원	서울패션직업전문학교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KK)건국사이버평생교육원	동국대학교DUICA	서울현대실용전문학교	인하항공직업전문학교
(PASSONE)패스원평생교육원	동국대학교부설미래융합교육원	서울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	장원사이버평생교육원
(SE)에스이사이버평생교육원	동남보건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정화예술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YJ)와이제이사이버평생교육원	동덕여자대학교 뉴에듀케이션칼리지	서일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조선이공대학부설평생교육원
(재)BBS미용예술실용전문학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부설미래 교육원	세종대학교미래교육원	(취)지식공동체 공동체원격평생교육원
(재)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동아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세한대학교원격평생교육원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
(주)한국항공기술직업전문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디지털평생학습원	수성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중앙대학교 원격미래교육원
(학)송실대학교송실호스피탈리 티직업전문학교	동의과학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수원대학교부설미래융합교육원	지식캠퍼스평생교육원
BA한국방송아카데미학원	동의대학교부설미래교육원	수원뷰티실용전문학교	천안충신평생교육원
EBS미디어원격평생교육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충신대학교부속원격평생교육원
KBS스포츠예술과학원	라사라패션직업전문학교	송실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케이스원격평생교육원
Kstudy한국원격평생교육원	라인원격평생교육원	송실원격평생교육원	케이지아이티뱅크 평생교육원
MBC아카데미 원격평생교육원	로이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	송의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
MBC아카데미사이버평생교육원	리더스원격평생교육원	스카이(SKY)원격평생교육원	한국IT직업전문학교
SJA실용전문학교	마이에듀원격평생교육원	신라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한국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
가천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글 로벌캠퍼스)	메가미래평생교육원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한국방송예술진흥원 평생교육시설
가천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메 디컬캠퍼스)	메가원격평생교육원	아이비원격평생교육원	한국어어택항공직업전문학교
개신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목원대학교 미래창의평생교육원	아주대학교부설글로벌미래교육 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평생교육 원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배론원격평생교육원	안양대학교 평생교육원	한국예술사관실용전문학교
경기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	한국원격평생교육원
경기대학교원격교육원	배화여자대학부설평생교육원	에듀윌원격평생교육원	한국항공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경남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백석대학교부설신학원격평생교육원	에스모드서울패션디자인학원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
경남정보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백석대학교신학교육원	여기스터디사이버평생교육원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경민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백석예술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연성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한서대학교 평생교육원
경희대학교부설글로벌미래교육원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부설평 생교육원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미래평생교육원	한성대학교 콘텐츠디자인칼리지
경희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국 제)	부천대학교평생교육원	영남대학교부설글로벌평생교육 원	한양건축평생교육원
계명대학교 계명시민교육원	비전원격평생교육원	영남이공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	사이에듀평생교육원	영산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한양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광운대학교부설정보과학교육원	삼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영산대학교 평생교육원	해밀원격평생교육원
국민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삼육보건대학교 사이버지식교육원	영산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해커스원격평생교육원
국제패션디자인직업전문학교	삼육보건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예인직업전문학교	허브원격평생교육원
글로벌아평생교육원	상명대학교 미래교육원	윌티칭	현대직업전문학교
김영평생교육원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윌패스캠퍼스원격평생교육원	호서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남서울대학교	서경대학교예술교육원	웅인대학교 부설 미래인재교육원	홍익대학교 부설 미술평생교육원
글로벌미래교육원(평생교육)			
뉴엠원격평생교육원	서울사사다인스티튜트학원		

붙임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제1조(목적)	x	[용어 정비] “서울지역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대학생”정의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함
제2조(정의)제2호	x	[용어 정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의 체계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
제2조(정의)제3호나목	△	[기술적 추계 곤란] “대학생” 정의를 확대하여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증가하여 서울시 재정지출이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신규 편입 대상자의 규모, 개인별 대출 잔액과 같은 자료를 파악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추계가 곤란함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제2항제2호	△	[기술적 추계 곤란] 신규 대상자에 대하여 ‘최종 학점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5년이라는 지원 기간을 설정하여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에 문의결과 구체적인 현황자료를 파악하기 어렵고 신규 대상자에 대한 기준 및 범위 등에 결정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 객관적 비용추계가 곤란함

※ 그 외 규정은 별다른 재정소요 요소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본 개정조례안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여 대학생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 안 제2조제3호나목 및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 범위가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부서(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에 문의 결과 현 시점에서는 새롭게 지원 대상에 편입되는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중 개인별 학자금대출 이자액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통계가 부족하고,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대상자의 신청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예상치를 예측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객관적 비용추계가 곤란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김 경 명

☎ 02-2180-7955

e-mail : kimkmi0809@seoul.go.kr